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ETF)·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1.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내파생상품증권”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장내파생상품증권”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 4) 상장지수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제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을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을 “상장지수증권을”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3) 중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를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장내파생상품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④ ----- ----- ----- ----- ----- -----장 내파생상품----- ----- ----- ----- ----- ----- ----- ----- ----- ----- ----- -----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
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
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

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상장지수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3